

서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

서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.

제4조,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35조의 2를 제34조로, 제37조를 제35조로 하며, 제39조 내지 제62조를 제36조 내지 제60조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. 세출에 이입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3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	제23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	제23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	제23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	제23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
①-④ (생략)	①-④ (현행과 같음)	①-④ (현행과 같음)	①-④ (현행과 같음)	①-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,000분의 10으로 한다.</u>	⑤ <u>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.</u>	⑤ <u>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.</u>	⑤ <u>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.</u>	⑤ <u>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.</u>
제34조(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)	제34조(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)	제34조(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)	제34조(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)	제34조(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)
① <u>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</u>	① <u>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</u>	① <u>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</u>	① <u>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</u>	① <u>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</u>

현행	개정안
<p><u>임야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임야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 국. 공유림 관리에 관한 매각, 취득, 대부등 업무를 담당한다.</u></p> <p>제35조(특별회계의 세입. 세출) ①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수입금이 특별회계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(공유림 제외)의 매각대, 대부료, 사용료 : 그 수입금액의 10% 2. 공유임야 매각대, 대부료 : 그 수입금액의 100% 3. 국유재산 매각대, 대부료, 사용료, 변상금 등 :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액의 100% 4. 일반회계 전입금 : 부족재원 <p>② 공유림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유림 구입비 및 관리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</p> <p>제35조의 2(분수립의 설정) (생략)</p>	<p>(삭제)</p> <p>제35조의 2(분수립의 설정) (현행과 같음)</p>